

서 면 답변서

질문 의원	신 주 범 의원
답변대상자	환경녹지과장
<p>보호수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질문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《 질 문 및 답변 내 용 》</p> <p>1. 거창군 관내 보호수 현황은?</p> <p>☞ 답변 : 40개소 52본(관리내역 : 별첨)</p> <p>2. 보호수 지정시 관리계획은?</p> <p>☞ 답변 :(지정) 산림법 제67조 1항, 시행규칙 제51 1항3호 산림청예규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법 관리요령 제20조 규정에서의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, 거목, 희귀목으로 전설이 담긴수목이나 특별히 보호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서 개인또는 단체에서 신청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검토하여 지정</p> <p>(관리)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하여 수목의 생육상태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</p> <p>3. 최근 3년간 우리군에 신고 접수된 수목 반출현황은?</p> <p>☞ 신고 접수된 수목 반출은 없음</p> <p>4. 비지정 보호수의 현황과 관리대책은?</p> <p>☞ 관내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은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하고 있으며 향후 비지정 보호수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호수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신고된 임목에 대하여는 경남도에 지정건의 관리토록 하겠음</p>	